Online Series

CO 09-24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

김 수 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3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찬성 26, 반대 6, 기권 15)되었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 내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북한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셋째,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북한측이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북한의 생존전략,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4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차원이다.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모든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개선전략이 투영된 결과이다. 금년 12월에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모든 유엔회원국이 4년 주기로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심의 받도록 도입된 새로운 제도이다.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와 더불어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표출된 것이다. 다른 유엔 회원국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제도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총회,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특별절차, 규약위원회 등 모든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북한의 생존전략 차원이다. 북한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인권을 명분으로 한 대북 적대시정책의 발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기에 앞서 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신(2009년 1월 29일자)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정치적 대립과 음모의 산물이며 인권이사회와 협력하는데 본질적 장애”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당국은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면 일인지배체제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한다. 동시에 ‘국권은 곧 인권’이라는 논리 아래 ‘선군정치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상의 정치방식’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이 선군정치를 통해 추구하고 있는 강성대국이란, 19세기적 부국강병형 생존전략으로 지식, 인권 등 복합번영을 지향하는 21세기 국제무대에는 부적절한 시대착오적 생존전략이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외부에서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여 주더라도 북한 당국이 계속하여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음모라고 배척하는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21세기형 생존전략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도 반발 일변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유엔인권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의 차원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이라는 직접적인 안보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규범을 받아들이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 안보위협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인지배 전체주의적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스스로 인권을 개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개선 요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확산시키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차원이다. 북한인권 개선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원칙에 철저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또다시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는 찬성표만 던졌다. 그런데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이어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외교통상부는 3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 배경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나타났다. 즉 북한은 결의안 채택 직후인 3월 27일자 『민주조선』에서 우리 정부의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고의적인 반공화국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반발하였다. 비록 북한이 단기적으로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인권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북한이 규범친화적 방향으로 개방될 때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